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3-25

수 원 지 방 법 원

제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9구합66348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
원 고	A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[redacted] 담당변호사 [redacted]
피 고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변 론 종 결	2019. 11. 21.
판 결 선 고	2020. 1. 30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18. 10. 5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3-25

가. 원고는 [redacted]시 [redacted]구 B 외 1필지 C아파트 D동 E호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를 [redacted]법원 F 부동산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경락받은 뒤 2014. 6. 16. 구 지방세법(2014. 5. 20.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'구 지방세법'이라고 한다)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(1,000분의 40)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7,380,000원, 지방교육세 738,000원, 농어촌특별세 369,000원을 신고·납부하였다.

나. 원고는 2018. 8. 16.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'원시취득'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세율(1,000분의 28)을 적용하여 이미 신고·납부한 취득세 2,656,800원, 지방교육세 2,214,000원, 지방교육세 442,800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다.

다. 피고는 2018. 10. 5. 원고에게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고 한다)을 하였다.

라.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. 12. 26.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, 조세심판원은 2019. 2. 27. 위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.

【인정 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의 주장

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,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. 그런데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
나. 관계 법령

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3-25

다. 판단

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, 경매절차로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.

① 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한다(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다15574 판결 등 참조). 민법 제578조는 경매가 사법상 매매인 것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.

② 부동산 경매 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고,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(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내지 5항, 제268조) 경매 이전에 설정되어 있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승계될 수 있다.

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(이하 '토지보상법'이라고 한다)상 수용은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이로 인한 효과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원시취득이다. 반면,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의 성격은 사법상 매매계약이므로 그 이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도 승계취득이다(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6두51719 판결 참조).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매는 그 성격이 사법상 매매에 해당하므로, 그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한다.

④ 2016. 12. 27.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"취득"의 정의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3-25

에 관하여 서술하며,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부기하였다. 그러나 경매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성격이 사법상 매매이므로, 지방세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3-25

<별지>

관계 법령

▣ 구 지방세법(2014. 5. 20.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6조(정의)

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취득"이란 매매, 교환, 상속, 증여, 기부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, 건축, 개수(改修), 공유수면의 매립,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, 승계취득 또는 유상·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.

제11조(부동산 취득의 세율)

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.

3. 원시취득: 1천분의 28

7.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

가. 농지: 1천분의 30

나. 농지 외의 것: 1천분의 40

▣ 지방세법(2016. 12. 27.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)

제6조(정의)

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취득"이란 매매, 교환, 상속, 증여, 기부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, 건축, 개수(개수), 공유수면의 매립,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(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, 승계취득 또는 유상·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. 끝.